

2014.12.04

## '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' 개정 요약 안내

### 1. 개정사유 및 시행일자

#### ● 개정취지

- 환급신청기관 변경방법 개선 관련 '14년 제3차 규제개선 채택 과제를 행정규칙에 반영
- 영세 자동간이 환급업체의 심사주기를 1년 → 2년으로 연장하는 등 '14년 제3차 규제개선 채택과제를 행정규칙에 반영하고, 그 밖에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

#### ● 시행일자 : 14. 11. 25. (화)

### 주요 개정내용

#### □ 심사주기 연장

영세기업이 대부분인 자동간이 환급업체의 업체 요건 및 과다 환급 여부에 대한 심사주기를 1년 → 2년으로 연장하여 영세 수출기업 부담을 완화

*※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자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수출신고서에 환급신청사항을 간략히 기재함으로써 환급 신청하는 업체*

#### □ 환급신청기관 변경

환급신청기관 변경을 업체가 편리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개선 (관할지 → 관할지 또는 변경지)

# 세인 소식지

www.seincustoms.com

2014.12.04

## □ 반입확인서 일괄 발급 허용

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에 환급대상수출물품을 반복 공급하는 경우에도 반입확인서 일괄 발급을 허용

## □ 환급신청서식 개정

FTA 체결국 확대에 따라 주요 수출국별로 환급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환급신청서식 개정

## □ 수입세액분할증명서 서식 개정

수입한 상태 그대로 국내거래된 물품을 수출신고할 때 원산지, 상표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세액분할증명서 서식 개정